

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재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5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5. 31.

발의자 : 임재훈 · 주승용 · 이찬열
김관영 · 채이배 · 김수민
조승래 · 박용진 · 유성엽
장정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시·도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매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인성교육 특성상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및 공공성이 중요함에도 출연의 근거가 없어 매년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어 사업 운영이 불안정적,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음.

또한, 매년 시·도교육감이 수립해야 하는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견수렴 방식을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, 시도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

수렴의 방식을 설명회,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하 고,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 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예산편성의 적법성 마련과 정책 추진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(안 제8조 및 제15조).

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공청회의 개최)”를 “(공청회 등의 개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공청회를 열어”를 “공청회, 설명회, 세미나,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”로, “공청회에서”를 “공청회 등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청회”를 “공청회 등”으로 한다.

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<u>공청회의 개최</u>)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<u>공청회를 열어</u>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, <u>공청회에서</u>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<u>공청회</u>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15조(인성교육 예산 지원)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<u>공청회 등의 개최</u>) ① ----- ----- ----- <u>공청회, 설명회, 세미나,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</u> -----<u>공청회 등에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<u>공청회 등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5조(인성교육 예산 지원) ① (<u>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</u>)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</p>